

금지동초등학교 학교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금지동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규칙의 구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와 휴업일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 3.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와 졸업 5.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6.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우리 학교는 금지동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 (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888-10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학년·학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4호의 방학 기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 할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와 학생정원

제8조 (학급편제·학생정원)

① 학급 수와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제 5 장 교과·수업일수·수업운영·출결석·과정수료 및 졸업

제9조 (교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작성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편성 운영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교육과정 시간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 배당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한다.

3.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 체험학습 세부운영 규정(제 11조 6항 관련)

목적	이 규칙은 「금지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1조 6항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 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채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④ ...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 (출결석)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지각: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 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⑤ 초등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초등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

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⑧ 초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⑨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13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퇴학·유예

제15조 (입학)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거주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② 입학 기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교육장이 결정한 날짜로 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이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도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전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전입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재취학·편입학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

년을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이외의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1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교의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해당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학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경우
 - ▶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밖에 취학의무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의무의 면제

- ▶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 발육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 한 해외출국-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 의무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 사망한자
 - ▶ 경찰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 취학의무 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보호 관련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운영지침(금지동초등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다.

제 7 장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제19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 · 제26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 및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조기진급 ·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0조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와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9 장 수업료·입학금과 기타의 비용징수

제23조 (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익자부담경비)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경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수한다.

제 10 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 (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학생 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이외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지동초등학교학교생활규정에 따른

다.

제27조 (학생의 학교생활)

- ①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 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28조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④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12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29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5.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가급적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 또는 학기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장은 학칙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0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지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전면개정안은 개정일(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